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17호 2022. 2. 14(월)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352호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회 람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 공고 제2022 - 352호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4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내 장애인단체 육성 및 이용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조성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에 앞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조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나. 설치 위치, 시설, 운영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다. 사용허가 대상,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손해배상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9조)
- 라.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622), FAX(063-620-6769)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063-620-6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붙임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2.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노인장애인과장

1. 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2조)
- 나. 설치 위치, 시설, 운영을 규정함 (안 제3조~안 제4조)
- 다. 사용허가 대상,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지원, 손해배상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안 제9조)
- 라.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2. . ~ 2022. 3. .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 불임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시에 사무소를 둔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이하 “장애인 어울림센터”라 한다)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서 남원시 봉맞1길 10(향교동)에 둔다.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교육실, 다목적 강당
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대상)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2. 전라북도농아인협회 남원시지회
3.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원시지회
4.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남원시지회
5. 전라북도꿈드래협회 남원시지회
6. 척수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7.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허가) ①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6조의 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가 장애인 어울림 센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 중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 중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제6조제2항 관련)

1. 사용자	단체명 (시설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 사용목적						
3.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사용대상 및 인원		명	
5. 사용시설명		사무실				
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		공용시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뒷면)

사 용 허 가 조 건

1.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준수한다.
2.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3.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5. 본 허가서 및 관련조례(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자의 해석에 따른다.
6. 상기의 허가조건 미 준수 및 적발 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 제한함에 동의한다.

붙임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남원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보호 및 육성) ①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4.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구 분					
		신설	○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자치행정국 노인장애인과 과장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김문훈 담당 : 지방사회복지주사 진균환 담당자 : 지방사회복지주사 서윤정						
4. 근거법령 등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사용허가의 대상)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6조(사용허가)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7조(사용허가의 제한)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입주 장애인 단체						
6. 규제 존속기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시까지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제5조(사용허가 대상)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2. 전라북도농아인협회 남원시지회 3.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원시지회 4.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남원시지회 5. 전라북도꿈드래협회 남원시지회 6. 척수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7. 전북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p>제6조(사용허가) ①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p> <p>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6조의 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7개 장애인 단체별 위치가 달라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구 향교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통한 장애인 어울림센터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설치
-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 규정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우리시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규제에 대한 반대나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해당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조례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발생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신청자(단체)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규제의 비용분석과 편익분석 결과 규제에 의한 새로운 비용발생은 없으며 규제에 의하여 불편함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편익이 압도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신설로 인한 반대의사가 없는 등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있음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타 시도 사례 : 해당없음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비 예산 사업으로 기존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별도 민원사무 구비서류 및 절차 규정 필요하지 않은 사안임